

 	보 도 자 료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18. 7. 27.(금) 총 4매(본문 2)	
주택기금과	• 과장 황윤언, 사무관 장대문, 주무관 임지현 • ☎ (044) 201-3342, 3345		
보 도 일 시	2018년 7월 3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9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용자 받기 어려워진다

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...최대 2년간 대출 제한

-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용자를 받기 어려워진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‘주택도시기금법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‘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7월 31일(화)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.
- ‘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되며,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(계속사업)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용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.
 - * (예)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용자 불가,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용자 실행도 중단
 -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하여 기금 용자를 제한하고,
 - 누계 평균벌점이 용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(1.0점)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용자 실행이 중단된다.

○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하여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하여 제한하며,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하여 기금 용자가 가중 제한되며

* (예) 6개월 영업정지 + 벌점 10점 = 최대 2년간 신규대출 및 추가용자 중단

- 사업주체 · 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용자 제한이 적용된다.

○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.

* 후분양 자금 대출 허용 공정률(60% 이상)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 예정

- 다만,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.

□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(40일간)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
○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'정보마당/법령 정보/입법예고'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(우)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(전화번호: 044-201-3342, 3345 팩스: 044-201-5530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장대문 사무관(☎ 044-201-33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

영업정지처분 및 벌점에 따른 기금지원 제한기준

□ 영업정지처분기간 별 출자·용자 신청의 제한 기준

영업정지기간	기금출자·용자 제한기간 및 범위
① 6개월 이상	· 영업정지 처분시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·용자 불가 ·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추가 용자 불가(분할실행 중단)
② 6개월 미만 ~ 3개월 이상	· 영업정지 처분시부터 종료 후 1년간 신규 출·용자 불가 ·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추가 용자 불가(분할실행 중단)
③ 3개월 미만 ~ 1개월 초과	· 영업정지 처분시부터 종료 후 6개월간 신규 출·용자 불가 ·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추가 용자 불가(분할실행 중단)
④ 1개월 이하	· 영업정지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신규 출·용자 및 추가 용자 불가(분할실행 중단)

□ 누계평균벌점 별 출자·용자 신청의 제한 기준

벌점	기금출자·용자 제한기간 및 범위
⑤ 10.0 이상	· 해당 반기의 누계벌점 공개일부터 2년간 신규 출·용자 불가 · 해당 반기의 누계벌점 공개일부터 1점당 1개월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용자금에 대한 추가용자 불가(분할실행 중단)
⑥ 10.0 미만 ~ 5.0 이상	· 해당 반기의 누계벌점 공개일부터 1년간 신규 출·용자 불가 · 해당 반기의 누계벌점 공개일부터 1점당 1개월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용자금에 대한 추가용자 불가(분할실행 중단)
⑦ 5.0 미만 ~ 3.0 이상	· 해당 반기의 누계벌점 공개일부터 6개월간 신규 출·용자 불가 · 해당 반기의 누계벌점 공개일부터 1점당 1개월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용자금에 대한 추가용자 불가(분할실행 중단)
⑧ 3.0 미만 ~ 1.0 이상	· 해당 반기의 누계벌점 공개일부터 1점당 1개월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용자금에 대한 추가용자 불가(분할실행 중단)
⑨ 1.0 미만	적용 제외

□ 영업정지와 누계평균벌점 합산 출자·용자 신청의 제한 기준

영업정지 \ 벌점	⑤ 10.0 이상	⑥ 10.0 미만 ~ 5.0 이상	⑦ 5.0 미만 ~ 3.0 이상	⑧ 3.0 미만 ~ 1.0 이상
① 6개월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2년간 추가용자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1년 10개월 ~ 2년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1년 6개월 ~ 1년 8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1년 2개월 ~ 1년 4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
② 6개월 미만 ~ 3개월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2년간 추가용자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1년 4개월 ~ 2년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1년 ~ 1년 6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8개월 ~ 1년 2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
③ 3개월 미만 ~ 1개월 초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1년 10개월 ~ 2년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1년 ~ 1년 10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8개월 ~ 1년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1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4개월 ~ 8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
④ 1개월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10개월 ~ 2년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1년 ~ 1년 8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1년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8개월 ~ 10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종료 후 6개월간 신규 출용자 불가 • 영업정지 처분일부부터 4개월 ~ 6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용자 불가